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 등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	3
2.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조항 정비 ..	5
3. 멸종위기종 학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전 등 금지	22
※ 참고자료	25
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25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2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가공·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복원 등의 목적으로 방사·이식·양도·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하여 인공증식한 것의 사용 허가 대상에 기존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이외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포함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금지 행위에 ‘양도·양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 <u>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u> ·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 -----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 ----- ----- ----- <u><단서 삭제></u>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¹⁾²⁾.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하에 허용하고 있음.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 서식지외 보전기관 간 개체 교환이나 이동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원칙적 금지 행위에 양도와 양수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리강화를 통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효적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⁵⁾.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참고자료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3) 참고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유통(流通)’은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고, ‘양도(讓渡)’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또는 그런 일) 또는 ‘법률’상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또는 그런 일)이며, ‘양수(讓受)’는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서 넘겨받음 또는 ‘법률’에서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의미함.(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개정안은 안 제68조와 안 제69조에서도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음.

안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조항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상 제14조제1항단서와 동 조 제3항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적 허용사유를 단일 조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 <u>유통·보관</u> ·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 <u>유통·보관</u>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 -----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 -----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안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가공·유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5) 참고로,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및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u>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u> <u>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u> <u>니하다.</u> 1. <u>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u> <u>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u> <u>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2. <u>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u> <u>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u> <u>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u> <u>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u> <u>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u> <u>하려는 경우</u> 3.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u> <u>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u>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u> <u>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u> <u>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u> <u>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u> <u>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u> <u>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u> 4. <u>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u> <u>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u>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u> <u>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u>	<u><단서 삭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경우</u>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u> 6. 그 밖에 <u>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u>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u>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현행	개정안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현행	개정안
	<u>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u> 8. <u>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u>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10.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11.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④ ----- ----- ----- -----. -- 제2항 ----- ----- ----- ----- -----. 1.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 ----- ----- -----

현행	개정안
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 -----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2항----- ----- ----- -----.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 제14조제2항-----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14조제2항제1호 ----- ----- -----

현행	개정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	② _____ _____ 제14조제2항 _____ _____ _____ _____ 포획·채취등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 15. (생략)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4항----- ----- ----- ----- ----- ----- 5. ~ 15.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유통·양도·양수·보관</u>----- ----- ----- 4. 제14조제4항----- -----

현행	개정안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14조제1항 단서</u> 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 --- <u>제14조제2항</u> ----- ----- -----
5. ~ 16. (생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생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제5항</u> 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u>제14조제6항</u> ----- ----- -----
2의2. ~ 9. (생략)	2의2.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

현행	개정안
	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폐사 또는 고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등에 대해 ①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법 제14조제1항단서)와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등 원칙적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법 제14조제3항).

[현행법에 따른 포획·채취 등에 대한 금지 예외]

	원칙적 금지 및 허용/제외 사유
포획·채취 등 “원칙적 금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 허용 사유 *기후부장관 허가 必要 (법 제14조제1항 단서)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본문 적용 제외 사유 *허가 不要 (법 제14조제3항)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항이 분리 규정되어 있어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인공증식’ 개체⁶⁾의 경우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도 ‘가공·유통 또는 보관’될 수 있는 문제와 ②방사(放飼)·이식(移植)에 대한 허가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⁷⁾ 및 ③양수·양도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14조제1항단서와 동 조 제3항으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제2항으로 병합 신설하면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하는 경우에도 기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허가사항]

* 인공증식 개체 허가	필요	수출·수입	→ 필요	수출·수입·이동·가공·보관·신설·방사·이식·양도·양수
	불요	가공·유통·보관		유통 삭제(상업적 이용 방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6) ‘인공증식’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증식하는 것이고, ‘인공증식 개체’란 야생생물이 허가된 인위적인 시설에서 증식되어 만들어진 각각의 개체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부는 살아있는 인공증식 개체의 방사, 이식은 야생개체군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사전 허가를 통해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사지역이 자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환경 수용력, 유전 적합성 및 근친 유무, 질병 유무 등을 방사·이식 전에 판단하고, 방사 이후에도 복원 개체의 관리 및 방사 이후 환류 등이 필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나의 항으로 분리·통합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放飼)한 경우 등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 ‘유통’을 명시적으로 삭제하여 인공 증식 개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2항에는 기후부 장관의 허가 외에도 제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제10호(서식지외보전기관 받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에도 ‘허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⁸⁾,

함께 정비되는 안 제70조 등의 조항에서 허가⁹⁾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되는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

8) **안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8. 생략)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10.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9) **안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안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14조제2항은 법 제70조(벌칙)의 구성요건으로도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강화된 명확성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⁰⁾.

10) **안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2항**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멸종위기종 학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전 등 금지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전 등’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던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u>광고 제한</u>)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u>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u>광고 등의 제한</u>) ----- ----- ----- ----- <u>광고·선전 등을 -----.</u> <u><단서 삭제></u>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다양한 SNS의 보급으로 멸종위기종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유포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지 대상에 ‘선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광고 이외의 매체로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단서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종의 보호 강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 제70조(벌칙)는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¹¹⁾.

또한, 이 경우 선전 ‘등’으로 조항을 개정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상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광고·선전을 금지한 유사입법례로는 「동물보호법」,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 등이 있음¹²⁾.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1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하 각 호 생략)

②~④ (생략)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문 의 처

02)6788-5541

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이하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참고자료

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구 분	생 물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68종)	
포유류 (14종)	늑대, 대륙사슴,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관코박쥐, 표범, 호랑이
조 류 (16종)	검독수리, 고니,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느시, 두루미, 먹황새, 뿔제비갈매기,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양서류·파충류 (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 (11종)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줌수수치, 통사리, 흰수마자
곤충류 (8종)	닷무늬길앞잡이,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 (4종)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육상식물 (13종)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제주고사리삼, 죽백란, 탐라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214종)	
포유류 (6종)	담비, 물개, 삵,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류 (53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속새, 검은목두루미,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따오기, 뜰부기, 매,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속새, 쇠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시베리아흰두루미,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청호반새,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뒷부리도요, 큰말똥가리, 팔색조, 향라머리 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류·파충류 (6종)	고리도롱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어류 (18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꺾저기, 꾸구리, 다목장어, 돌상어, 독종개, 묵납자루, 버들가지, 부안종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칠성장어,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한독종개

구 분	생 물 종
곤충류 (21종)	깊은산부전나비,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똥보주름메뚜기, 멋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불나방,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 표범나비, 윤조롱박딱정벌레, 은줄팔랑나비,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 호랑꽃무지, 한국꼬마잠자리, 홍줄나비
무척추동물 (28종)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동, 깃산호, 대추귀고동, 둔한진충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뚝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육상식물 (79종)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 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범의귀, 나도승마, 나도여로,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눈썽고사리, 단양쑥부쟁이,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홍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물석송,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모시대,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잎난,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평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장백제비꽃, 전주물고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겉이란, 참땃꽃,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한라장구채,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굴
해조류 (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고등균류 (1종)	화경솔밭버섯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